

**부속서 III  
호주의 유보목록**

호주 유보목록을 위한 서설

1. 부속서 III의 호주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 및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호주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8.9조(비합치 조치)제1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호주의 기존의 조치
    - 1) 제8.2조(내국민 대우)
    - 2) 제8.3조(최혜국 대우)
    - 3) 제8.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접근)
    - 4) 제8.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8.8조(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8.9조(비합치 조치)제2항에 따라, 호주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
    - 1) 제 8.2조(내국민 대우)
    - 2) 제8.3조(최혜국 대우)
    - 3) 제8.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접근)
    - 4) 제8.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8.8조(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2. 1호나목에 기술된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분야를 지칭한다.
  - 나. 관련의무는 제 8.9조제1항에 따라, 기재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 다.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을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라. 조치 근거는 유보된 비합치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근거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 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1호다목에 기술된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분야를 지칭한다.
- 나. 관련의무는 제 8.9조에 따라 그 유보목록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 다.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을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 라.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8.9조제1항가호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조치가 부속서 8-나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8.9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호주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에 대하여 이 부속서에서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목록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1.3조(내국민 대우 - 투자), 제11.4조(최혜국 대우 - 투자) 및 제11.9조(이행요건 - 투자)에 대한 비합치 조치로 작용한다.

## 두주

1. 제8장 (금융서비스)에 따른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8.4조에 대한 호주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sup>1</sup>.
3. 호주는 제8.4조에 대한 제8.9조제1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8.9조 제1항다호는 제8.4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들에만 적용되며 제8.4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III의 호주 또는 한국의 유보목록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제8.10조에 따라 신중함을 이유로 조치들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8.10조에 따른 호주의 조치 채택 혹은 유지 권리는 부속서III의 “제8.2조 또는 제8.4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에 있는 한국의 목록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sup>1</sup>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공인 예치기관의 법적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III**  
**호주의 유보목록**

제1절

분야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59년 은행법(연방) 1998년 지급시스템(규정)법(연방)
유보내용	호주에서 예금기관으로 허가 받은 외국은행(외국예금기관) 의 지점은 개인 및 비법인 기관으로부터 호주달러 25만 달 러 미만의 최초 예치금(및 그 밖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소는 호주에서 예금을 위한 광고를 포 함하여 어떠한 은행영업도 수행할 수 없다. 그러한 대표사 무소는 연락처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허용된다.

분야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8.8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2001년 회사법(연방) 2001년 회사규정(연방)
유보내용	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2명은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1명은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분야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8.4조) 국경 간 무역(제8.5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8.8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근거	지역 정부 수준의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유보내용	지역 정부 수준의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분야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근거	1959년 코먼웰스 은행법(연방)
유보내용	이전에 연방정부가 소유하였던 코먼웰스 은행의 부채는 과도적 보증약정의 적용을 받는다.

## 제2절

분야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및 지역

**유보내용**              호주는 금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소유 실체의 민영화에 관련된 보증을 포함하여 그러한 실체에 대한 정부의 보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sup>2</sup>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리를 유보한다.

---

<sup>2</sup> 즉, 일반적으로 경쟁을 허용하고 그 공공부문 소유권을 근거로 특정 실체에 순경쟁우위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호주의 경쟁적 중립성 정책의 적용을 제외하고, 제8.1조제3항나목에 따라 제8장(금융서비스)의 적용에서 제외될 조치.